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2022. 11. 29(화)

경상북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38
제출일자	2022.11.17.
회부일자	2022.11.22.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영두)

경상북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 제안이유

가. 최근 높아진 위상으로 재외동포들에게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상승하고 있는반면, 2~4세대로 전환되면서 상당수의 청소년들은 한국과의 괴리와 소외를 경험

나. 세계 193개 국가, 200여만명의 재외동포 청소년 중 경북 출신 청소년들을 경북과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미래 인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경북 발전을 위한 미래 인재로 양성

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문제 해소 및 4차산업 혁명 시대를 이끌 새로운 글로벌 성장동력 마련 등 경상북도의 장기적인 과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 비전을 구상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재외동포 청소년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안 제3조)

다.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안제5조)

라.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 사업의 내용(안 제6조)

마. 사업추진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안 제9조)

4. 관계법령

가. 「공공외교법」 제1조~제3조, 제6조, 제7조

나. 「지방자치법」 제193조

다.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조, 제9조

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마. 「청소년 기본법」 제3조

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3조

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6조

아.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제2조, 제5조

라. 「경상북도 포상 조례」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5.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7.29. ~ 8.17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6. 관련부서 협의

가. 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나. 법제심사 : 지원대상의 구체화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 유발요인 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 실태조사 시 남녀 성별 반영

마. 비용추계서 : 연간 3억원(재외동포청소년 35명, 경북청소년 15명)

7. 검토의견

□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

- 본 제정안은 「공공외교법」 제6조(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수립), 「지방자치법」 제193조(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에 근거하여 경상북도를 연고로 하는 재외동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민족 정체성 강화를 통해 경북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안 제1조(목적)는 경상북도 연고 재외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민족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경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
- 안 제2조(정의)는 ‘경상북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자격을 연고지가 경상북도인 사람의 자녀로서 외국에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함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는 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에 필요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지위)는 정체성 함양의 수혜자로서의 지위와 정체성 계발 의무자로서의 지위를 규정함
-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는 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경북도의 기본계획 수립 방침과 내용을 규정함
- 안 제6조(지원사업)는 정체성 함양을 위해 도지사가 수행할 사업의 내용을 규정함
- 안 제7조(재정지원)는 제6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규정함
- 안 제8조(교류협력)는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을 위한 관련 기관 등과의 협약 체결 근거를 규정함
- 안 제9조(포상)는 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에 기여한 기관 등에 대한 포상근거를 규정함

□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정한 적이 없는, 경상북도에서 최초로 제정하는 재외동포 청소년 대상 조례로서의 의의가 있다 할 것임
- 먼저 법적 근거 측면에서는 「공공외교법」의 경우 국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과 협력하는 외교활동을 ‘공공외교’라고 하는 바, 「공공외교법」 보다는 「지방자치법」 제193조(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법적 근거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도 외국 기관·단체를 의미

하는 것으로 재외동포 친목단체·기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자치법 제193조(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제193조(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외교·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교류·협력, 통상·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또한 조례명 중 ‘정체성’은 현행 법령명에서는 사용된 적이 없는 용어이며 다만 「오산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유일하게 ‘정체성’이 사용되었음. 한편, 경상북도의 경우 「경상북도 미래전략 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에서 ‘정체성’을 정의한 사례가 있어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경상북도 미래전략 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정체성”이란 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성장 동력의 정신적 기반이 되는 정신문화 유산을 말한다

- 또한 제1조(목적)의 ‘연고’ 및 제2조(정의)의 ‘연고지’는 법령상 용어로는 매우 모호하여 ‘연고, 연고지’에 대한 정의가 별도로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에서 ‘연고지’가 정의된 사례가 있음

<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제3조(정의) >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2. “연고지”란 출생지, 성장지 및 거주지, 최초 임용지, 3년 이상 근무한 지역 등을 말한다.

- 또한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제1항제1호의 내용 중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은 새정부 국정과제/정책 중 하나로서 ‘지역별, 분야별, 세대별 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향후 국정과제의 추진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앙정부와의 협력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와 함께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은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이에 관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방안도 별도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안은 대외적으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경상북도의 위상을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알리고, 이들을 경북의 미래 인적자원으로 양성하기 위한 지원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취지와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일부 조문 용어의 불명확성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업무의 중첩 등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바, 향후 규칙 또는 업무 매뉴얼의 제정을 통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은 물론 새정부 국정과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모범사례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기타 용어정리와 관련, 제2조(정의)에서 ‘(이하 “도 재외동포”라 한다)’를 ‘(이하 “재외동포”라 한다)’로 수정할 경우

전체 조문이 간결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또한 제6조(지원사업) 제1항제2호의 '도내'는 앞 조항에서 '경상북도를 “도”라고 한다'는 단서가 없으므로 향후 조례 개정 시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해야 할 것임

참고

국가별 한국 재외동포 현황

국가별	2,017			2,019			2,021		
	총계	시민권자 +영주권자	일반재류자 주권 및 유학생	총계	시민권자 +영주권자	일반재류자 및 유학생	총계	시민권자 +영주권자	일반재류자 및 유학생
세계	7,430,688	5,807,695	1,622,993	7,493,587	5,838,255	1,655,332	7,325,143	5,831,667	1,493,476
미국	2,492,252	1,872,995	619,257	2,546,982	1,908,699	638,283	2,633,777	1,964,313	669,464
중국	2,548,030	2,205,226	342,804	2,461,386	2,161,054	300,332	2,350,422	2,102,526	247,896
일본	818,626	745,470	73,156	824,977	736,869	88,108	818,865	726,830	92,035
캐나다	240,942	186,685	54,257	241,750	188,714	53,036	237,364	200,893	36,471
우즈베키스탄	181,077	178,625	2,452	177,270	175,490	1,780	175,865	174,254	1,611
러시아	169,638	163,695	5,943	169,933	163,911	6,022	168,526	164,068	4,458
오스트레일리아	180,004	129,304	50,700	167,331	125,359	41,972	158,103	130,371	27,732
베트남	124,458	287	124,171	172,684	0	172,684	156,330	0	156,330
카자흐스탄	109,133	107,301	1,832	109,923	108,396	1,527	109,495	108,551	944
독일	40,170	18,114	22,056	44,864	19,449	25,415	47,428	21,643	25,785
영국	39,934	20,715	19,219	40,770	21,128	19,642	36,690	22,011	14,679
브라질	51,531	50,533	998	48,281	47,748	533	36,540	36,083	457
뉴질랜드	33,403	25,363	8,040	38,114	28,668	9,446	33,812	26,039	7,773
필리핀	93,093	1,198	91,895	85,125	1,389	83,736	33,032	1,693	31,339
프랑스	16,251	3,915	12,336	29,167	15,502	13,665	25,417	15,698	9,719
아르헨티나	23,194	22,710	484	23,063	22,560	503	22,847	22,598	249
싱가포르	20,346	2,905	17,441	21,406	3,093	18,313	20,983	3,311	17,672
태국	20,500	181	20,319	20,200	205	19,995	18,130	206	17,924
키르기스스탄	19,035	16,968	2,067	18,515	17,168	1,347	18,106	17,238	868
인도네시아	31,091	4,641	26,450	22,774	2,843	19,931	17,297	2,508	14,789
말레이시아	13,122	71	13,051	20,861	628	20,233	13,667	149	13,518
우크라이나	13,070	12,736	334	13,070	12,738	332	13,524	12,755	769
스웨덴	3,174	2,224	950	12,721	11,452	1,269	13,055	11,556	1,499
멕시코	11,673	2,734	8,939	11,897	6,318	5,579	11,107	6,968	4,139
인도	10,390	19	10,371	11,273	22	11,251	10,674	21	10,653
캄보디아	10,089	0	10,089	11,969	0	11,969	10,608	0	10,608
아랍에미리트	10,852	0	10,852	10,930	0	10,930	9,642	0	9,642
네덜란드	2,966	1,016	1,950	8,601	5,699	2,902	9,473	5,967	3,506
덴마크	680	144	536	9,581	8,871	710	8,694	7,994	700
노르웨이	1,043	593	450	7,667	7,157	510	7,744	7,217	527
파테말라	5,312	4,578	734	5,501	4,698	803	5,629	4,719	910
대만	6,293	1,060	5,233	5,610	1,204	4,406	5,527	1,486	4,041
벨기에	1,085	286	799	5,139	4,081	1,058	5,277	4,262	1,015
파라과이	5,090	4,650	440	5,039	4,641	398	4,833	4,492	341
헝가리	1,437	183	1,254	1,737	214	1,523	4,544	403	4,141
스페인	4,520	2,780	1,740	4,929	1,976	2,953	4,530	2,915	1,615
이탈리아	4,311	1,426	2,885	4,624	1,461	3,163	4,089	1,487	2,602

국가별	2,017			2,019			2,021		
	총계	시민권자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주권 및 유학생	총계	시민권자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및 유학생	총계	시민권자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및 유학생
스위스	2,674	1,172	1,502	3,936	2,423	1,513	3,882	2,571	1,311
남아프리카공화국	3,650	2,010	1,640	3,843	1,408	2,435	3,357	1,313	2,044
튀르키예	2,332	0	2,332	2,951	0	2,951	2,727	0	2,727
오스트리아	2,553	1,115	1,438	2,546	956	1,590	2,720	1,001	1,719
폴란드	1,745	250	1,495	3,729	330	3,399	2,635	283	2,352
미얀마	3,456	4	3,452	3,860	18	3,842	2,537	18	2,519
체코	2,061	246	1,815	2,676	306	2,370	2,505	419	2,086
칠레	2,635	2,373	262	2,510	2,229	281	2,402	2,137	265